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 인개택총524-1호

공고일자 : 2020년 3월 11일

공고기한 : 2020년 3월 11일 ~ 2020년 4월 10일

게시판 : 각 충전소

공 고 문

제 목 : 조합 정관 개정 승인.

조합 정관 및 규정은 조합정관 제22조의 지부를 운영함에 있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부장의 업무중 출장서비스와 관련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제2호에 근거하여 지부장을 조합의 상근직으로 개정함으로 좀더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20년 3월 3일 인천시로부터 조합 정관 개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 지부장 급여는 공제조합 현장출동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이사,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조합예산은 일절 지출되지 않습니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22조 (지부장) 1. 2. 지부장은 이사장이 대의원 당선자중에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 단, 지부장 해임시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	제22조 (지부장) 1. 종전과 같음 2. 지부장은 이사장이 대의원 중에서 <u>추천하여 대의원에서 선출하고 상근직으로 하며, 대의원직을 겸직 할 수 있다.</u> 3. <u>지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하고 유급으로 하며, 급여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신설)</u> 4. <u>지부장의 임무는 제5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신설)</u> 5. <u>지부장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며, 지부장 해임시에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신설)</u>
제24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2. 3. 4.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종전과 같음 2. 종전과 같음 3. 종전과 같음 4.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단 이사의 해임시에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u>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